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봉사 활성화〉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3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12.
- (3) 회 부 일 : 2025. 3.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검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봉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①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의료봉사 근거를 마련하고, ② 의료봉사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면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 공무원의 의료봉사에 대해서는 겸직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의료봉사) ①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료봉사를 하여야 하며, 의료봉사를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령 상 의료봉사를 정의하거나 의료봉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일부 법령에서 ‘의료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¹⁾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 사전적 의미인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의를 도모하는 일’²⁾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은 의료봉사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고 표현하여 사전적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의료봉사는 현재 별도의 절차 없이 의료인 또는 의료인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2항 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 다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23조³⁾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의료봉사의 현황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연인원 자원봉사 규모는 201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 급감한 이후 2024년까지 이전의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음.

3)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분야별 자원봉사 연인원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생활편의	6,424	7,329	7,731	7,502	6,980	3,089	2,641	3,391	4,070	4,410
주거환경	898	1,139	1,300	1,402	1,156	571	555	524	542	508
상담	272	297	295	309	310	166	159	180	194	206
교육	1,857	2,435	2,184	1,908	1,776	759	757	845	1,069	1,394
보건의료	314	378	406	388	408	149	182	171	182	196
농어촌	143	268	235	189	195	141	176	190	205	181
문화행사	2,884	3,355	3,500	3,444	3,264	840	759	1,189	1,603	1,669
환경보호	1,787	2,707	2,737	2,094	1,794	876	1,036	1,269	1,323	1,374
행정보조	1,621	1,763	1,823	1,913	1,976	931	972	1,062	1,180	1,186
안전예방	4,090	4,510	4,954	4,515	4,114	2,865	2,700	2,913	3,161	3,231
공익인권	68	82	90	107	120	81	84	91	92	101
재해재난	71	126	90	88	50	434	454	316	80	46
국제협력	95	105	113	85	79	47	32	21	29	45
멘토링	266	333	353	330	339	168	195	181	151	153
기타	4,024	5,196	5,564	6,339	6,559	2,870	2,934	2,528	3,183	3,354
합계	24,814	30,023	31,375	30,613	29,120	13,987	13,636	14,871	17,064	18,054

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

- 인구대비 등록률과 활동률은 분야별 자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전체 활동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건
의료분야의 활동률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인구대비 자원봉사 현황 >

(단위: 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51,529	51,696	51,778	51,826	51,849	51,829	51,638	51,439	51,325	51,217
등록인원	11,383	11,024	12,016	12,831	13,794	14,255	14,700	14,954	15,459	15,939
활동인원	3,746	4,590	4,876	4,291	4,192	2,233	1,863	1,906	2,081	2,183
등록률	22%	21%	23%	25%	27%	28%	28%	29%	30%	31%
활동률	33%	42%	41%	33%	30%	16%	13%	13%	13%	14%

주: 등록률=등록인원/인구*100, 활동률=활동인원/등록인원*100

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 재구성

- 개정안은 의료봉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함

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동기는 다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일부 유형의 경우 실비보전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의료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참여요인과 참여행태를 분석한 한 연구⁴⁾는 자원봉사자의 참여행태를 ① 지속적·합리적 생활참여형, ② 중립적·추종적 생활참여형, ③ 적극적·합리적 전문가 참여형, ④ 소극적·이익추구적 참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이 중 4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봉사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실비지원 등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상 의료봉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의료봉사 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개정안 제27조의2제2항과 같이 법률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오승석·정종고, '자원봉사의 참여요인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 - 전문 의료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제2권제1호, 2002.5.31.

- 둘째, 공무원의 겸직허가제도는 해당 직무를 겸함으로써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대상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할 수 있음.⁶⁾

그런데 일회성의 의료봉사인 경우 계속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계속성이 있는 의료봉사의 직을 겸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가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27조의2제3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셋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⁷⁾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6)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中) <겸직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7)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 해당하고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을 지출할 수 있는데, 2025년 4월 현재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⁸⁾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용지원 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근로시간 중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소속 의료기관의 본래 업무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공무원도 자원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높지 않음.

8)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조례 예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인사혁신처(신중검토)

- 검직허가제도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는 직무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함. 따라서, 현행 규정상 계속성 없는 1회성 의료봉사는 검직허가 없이 할 수 있음.
- 다만, 계속성 있는 의료봉사 행위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사를 통해 검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활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⁹⁾

(3) 대전광역시 유성구(수정)

- 지자체장이 의료봉사행위에 직접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수해야 할 의료봉사의 목적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의료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면 일회성 의료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9) 대학교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특례(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를 두고 있으나, 소속학교의 장의 겸직허가는 받도록 하고 있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의료인과 의료단체의 의료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의료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다만, 의료봉사 주체로 간호조무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에 제27조2 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의료봉사를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4